



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?

특별사법경찰관 개념 및 역할

사회발전과 분화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식품, 원산지, 환경, 공중위생, 의약, 동물보호, 농약·비료 등의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

○ 특별사법경찰관리 : 행정청(도청, 시청 등) 소속 공무원(관할 지검 검사장이 지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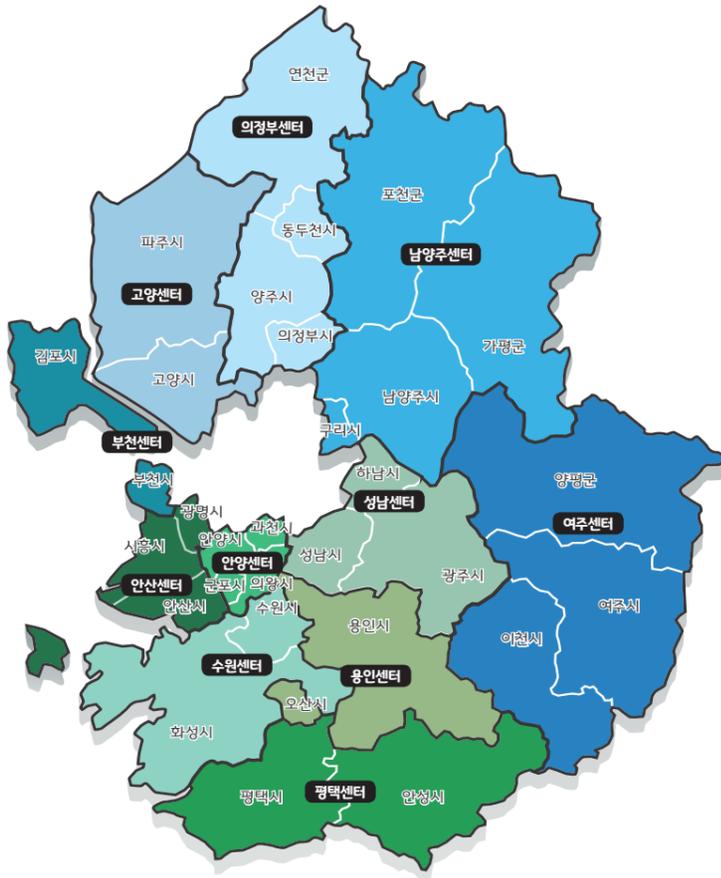
※ 일반사법경찰관리 : 검찰청, 경찰청 소속 공무원

특별사법경찰과 일반사법경찰과의 관계

- 공통점**
 - 수사라는 사법경찰업무를 수행
 - 수사상에 있어 검사의 지휘·감독 및 형사소송법의 적용

- 차이점**
 - 직무의 범위 및 수사관할

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할 및 연락처



경기도 콜센터 031) 120

| 수사센터 | 관할구역 | 연락처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경기도청 | 총괄 | 8008-5042 |
| 수원 | 수원, 화성 | 228-6638 |
| 용인 | 용인, 오산 | 324-5256 |
| 안양 | 안양, 과천, 의왕, 김포 | 8045-2139 |
| 부천 | 부천, 김포 | 032) 625-7907 |
| 성남 | 성남, 하남, 광주 | 729-4947 |
| 여주 | 여주, 이천, 양평 | 887-2767 |
| 안산 | 안산, 시흥, 광명 | 481-3637 |
| 평택 | 평택, 안성 | 8024-5931 |
| 고양 | 고양, 파주 | 8075-9624 |
| 의정부 | 의정부, 양주, 동두천, 연천 | 850-5861 |
| 남양주 | 남양주, 구리, 포천, 가평 | 590-8965 |



환경 분야 대기·수질·폐기물 주요 위반 사례

본 안내문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한 환경(대기, 수질, 폐기물) 분야의 주요 위반사항을 정리 한 것입니다. 안내된 내용을 확인 하셔서 위법 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형사 및 행정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
비산먼지 분야 위반사례

| 대기환경보전법 | 위 반 사 례 | 벌 칙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|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| 300만원 이하 벌금 |
| |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| |
| |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| 100만원 이하 과태료 |



대기배출업소 분야 위반사례

| 대기환경보전법 | 위 반 사 례 | 벌 칙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3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| 무허가(변경허가) 대기배출시설 설치조업 |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|
| |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|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| 100만원 이하 과태료 |
| 제26조 방지시설의 설치 |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|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|
| 제30조 가동개시 신고 |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|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|
| 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 시설의 운영 |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희석 배출 행위 |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|
| | 공기 조절장치 및 가지배출관 설치 행위 |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비정상 가동으로 인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|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|
| | 부식·마모 및 고장·훼손 방지 | 200만원 이하 과태료 |
| |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보존 | 300만원 이하 과태료 |
| 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| 측정기기 미부착 |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측정기기 미작동 |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측정기기 고의 훼손 |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조작으로 인한 측정결과 누락 및 거짓측정 |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부식·마모 및 고장·훼손 방지 | 200만원 이하 과태료 |
| 제39조 자가측정 |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| 500만원 이하 과태료 |



폐수배출업소 분야 위반사례

| 물환경보전법 | 위 반 사 례 | 벌 칙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3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| 무허가(변경허가)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|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|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| 100만원 이하 과태료 |
| 제35조 방지시설의 설치 |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위반 | 1,000만원 이하 과태료 |
| 제37조 가동시작 신고 |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작신고 미이행 |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폐수무단방류 및 비밀배출구 설치 행위 |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물 희석배출 행위 |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비정상 가동으로 인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|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|
| 제38조 배출시설과 방지 시설의 운영 |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보존 | 300만원 이하 과태료 |
| | 측정기기 미부착(적산전력계 및 적산전력계 제외) |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적산전력계 및 적산전력계 미부착 | 100만원 이하 벌금 |
| 제38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| 측정기기 미작동 |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조작으로 인한 측정결과 누락 및 거짓측정 |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부식·마모 및 고장·훼손 방지 | 1,000만원 이하 과태료 |
| 제38조의3 측정기기 부착 사업자의 금지행위 |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위반 | 1,000만원 이하 과태료 |



폐기물 분야 위반사례

| 폐기물관리법 | 위 반 사 례 | 벌 칙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| 사업장폐기물 무단 투기 |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사업장폐기물 무단매립 또는 소각 행위 |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|
| 제13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|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 오염 |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 | 1,000만원 이하 과태료 |
| 제17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|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미이행 |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미이행(지정폐기물 제외) | 1,000만원 이하 과태료 |
|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|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처리 |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사업장폐기물 인수·인계내역 올라로시스템 미입력 | 1,000만원 이하 과태료 |
| 제25조 폐기물처리업 (수집·운반업, 처분업, 재활용업) |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 |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|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 위반 |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대여행위 |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폐기물 보관시설(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) 외 보관 |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폐기물의 보관 허용량 및 기간 초과 |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위반 | 1,000만원 이하 과태료 |
| 제29조,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검사 | 미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|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|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규모미만(25kg/hr)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|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미이행 |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|
| 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 |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|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폐기물처리 신고자 준수사항 위반 | 300만원 이하 과태료 |